

사단법인 한국생약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생약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약칭“KSP”라 한다)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학문적 유대를 원활히 하여 국내·외적으로 생약학 및 천연물과학 등의 발전과 관련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2. 학술잡지의 간행
3. 생약 및 천연물에 관한 연구 및 표창
4. 학술문헌의 교환 및 간행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 2(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 4조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생약학 또는 천연물과학을 전공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본회를 위하여 공헌이 많으며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인사로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5.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본회의 사업 수행을 방해한 자
4.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정수)

본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7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대의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추대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등기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원의 궐위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분장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차년도 회장으로 임명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 ④ 상임이사는 본회의 재무, 연구발표, 학술강연 및 강습회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등)

-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한 자

- 2. 본회에서 제명된 자
- 3.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 ②임기만료 후에도 본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4조(대의원총회 권한)

본회의 사무는 정관으로 임원 또는 회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외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 ①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운영한다.
- 신임대의원은 기존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 ②단, 대의원 중 최근 5년간 대의원 회비를 미납한 경우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16조(대의원총회 소집)

- ①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②회장은 매년 1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대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사회회의 의결로 대의원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④회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 7.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도 가능하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사록)

- ①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회원수

3. 의결사항
 4.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
- ②의사록은 회장과 출석대의원 중 그 회의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시 대의원총회의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6.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기금위원회

②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무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대의원 및 임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기부금품
4. 기타의 수입금

제 27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금액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 28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0조(경비의 조달방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1조(회계의 구분)

-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식

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무총리령)을 준용한다.

제36조(법인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8조(정치적 중립성)

본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
- 2007년 2월 20일 개정
- 2008년 1월 31일 개정
- 2009년 2월 12일 개정
- 2015년 11월 30일 개정
- 2016년 11월 3일 개정
- 2020년 01월 6일 개정
- 2023년 01월 31일 개정

생약학회지 투고 규정(규정 1)

- 1. 원고내용** : 생약학 및 그 관련 과학의 논문으로서 국내외의 학술지에 이미 발표 또는 투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종 류** : 원보(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단보(Note), 속보(Communication) 및 정보(Information)로 하고 원고 앞면에 저자가 그 구분을 명시한다. 원고는 본지 인쇄지면으로 그림, 표 등을 합하여 편당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ㄱ. 원보 - 창의에 의하여 새로운 지견을 얻는 것으로서 13면 이내.
 - ㄴ. 종설 - 국내외의 보문을 종합 전망한 것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집필을 의뢰하면 15면 이내.
 - ㄷ. 단보 - 간단하고 단편적인 실험지견으로서 2면 이내.
 - ㄹ. 속보 - 미완성된 실험지견으로 차후 원보로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2면 이내.
- 3. 용 어** : 학명, 술어 및 물질명 등은 국제 규약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표 제** : 표제, 저자명, 소속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하며 표제는 간략히 기재하고 동위 원소 표지화합물 이외는 화학방정식 또는 분자식 등을 쓰지 않으며, 저자명, 소속은 호칭 그대로 쓴다.
- 5. 체 제** : 투고 규정 2를 준수한다.
- 6. 초 록** : 원보, 단보 및 속보에 있어서는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7. 채택과 교정** : 원고의 게재는 채택 순을 원칙적으로 하되, 편집상 다소 변경될 수가 있다. 채택 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채택되지 않은 논문과 일부 수정을 요하는 것은 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교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 8. 별 책** : 별책이 필요로 하는 저자는 사전에 한림원에 연락하여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 9. 접수와 발간** : 접수는 수시로 하되, 규정 2의 체제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회지는 년 4회(3, 6, 9, 12월 말일) 발간한다.
- 10. 정 정** : 내용에 있어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저자가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하면 다음 호에 그 정정을 게재한다.
- 11. 자 격** : 투고자격은 본회 정회원에 한하고, 회원 외의 기고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12. 논문게재료** : 저자는 인쇄 페이지당 40,000원을 부담하고, 인쇄는 흑백을 원칙으로 하되, 저자의 요구시 칼라로 인쇄할 수 있으나 추가비용은 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속보는 원보게재비용의 2배를 청구한다.
- 13. 원고송부** : 한국생약학회 홈페이지 (<http://www.ksp.or.kr>)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 14. 전문가 심사** : 투고된 논문은 2-3명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과정은 세 번까지 반복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게재거절로 처리한다.

(2023년 2월 28일 개정)

생약학회지 투고 규정(규정 2)

원고의 준비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준비하되 A4 용지나 8.5×11인치의 백지에 한 면만 인쇄하며, 상하좌우 3 cm의 여백을 남기도록 줄 간격은 더블 스페이스로 유지하고 활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한다. 모든 원고는 쪽수가 순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첫 장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기관 및 교신저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한다. 둘째 장에 Abstract와 Key words를 기재한다.

논문의 체제 투고 규정 1의 2항의 원보 및 단보의 원고는 서론·재료 및 방법·결과·고찰·결론·사사·인용문헌의 순으로 기재하되 서론이라는 소제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영문 원고의 경우 Abstract, Key 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Acknowledgments, Literature Cited 순으로 하되 Introduction이라는 소제목은 붙이지 아니한다. Results와 Discussion은 합칠 수 있으며, Conclusion은 생략할 수 있다.

제목·저자·소속기관 각각 줄을 바꾸어 국문으로 기재한 다음에 똑같이 영문으로 기재한다. 영문의 소속기관명 다음에는 도시명, 우편번호 및 국명을 기재한다. 제목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쓰고 분자식 또는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방사성원소 표지화 합물은 예외이다. 학명은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저자명을 기재하고 그 이후는 종명과 속명만을 기재한다. 교신 저자는 성명의 우상단에 *로 표시하고 교신 저자의 E-mail 주소를 주를 달아 표시한다.

Abstract 원보·단보 및 속보는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되 Abstract라는 제목을 붙이고 계속하여 기재하여 하나의 paragraph로 하고 번호를 붙여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

Key words 논문에 사용한 생물의 학명, 과명, 성분명, 중요한 약리작용 및 생리활성 등을 포함하되 5개 이내로 함축한다. 용어는 Chemical Abstract의 Key word index에 준한다.

서론 원칙적으로 연구의 목적 및 그 연구와 관련된 보문을 간단히 소개한다.

재료 및 방법 간단하게 기술하되 타인의 추시가 가능하도록 기재한다. 실험재료는 산지, 채집시기, 채집장소, 확증표본(voucher specimen)의 수집자, 표본 번호 및 보관장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결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결과를 그림 및 표에 중복하지 않는다.

고찰 실험결과를 검토 설명할 것이며 결과에 기재한 내용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결

과와 합칠 수도 있다.

결 론 실험 결과의 내용을 함축하여 기술한다.

사 사 감사의 말을 쓰고 계속하여 기재한다.

인 용 문 헌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연도, 제목, 잡지명, 권수, 페이지 순이며, 단행본은 저자명, 연도, 서명, 인용페이지, 출판사, 소재지의 순으로 기재하되 예의 형식에 정확히 맞추어 기재한다. 단, 타논문의 인용부분에 나오는 논문의 이차적인 인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 :

1. Littlewood, G. M., Hooper, N. M. and Turner, A. J. (1989) Ectoenzymes of the kidney microvillar membrane. *Biochem. J.* **257**: 361-367.
2. Bhacca, N. S. and Williams, D. H. (1964) Application of NMR spectroscopy in organic chemistry. Holden-Day, San Francisco.
3. 육창수(1989) 원색한국약용식물도감, p132. 아카데미서적, 서울.
4. Hegnauer, R. (1971) Chemical patterns and relationships of Umbelliferae. In Heywood. V. H. (ed.), The biology and chemistry of the Umbelliferae, pp267-277, Academic Press, New York.

인용문헌은 본문중 저자명의 우상부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반괄호는 달는다. 기타의 경우는 문장의 끝에 붙인다.

물 질 명 원칙적으로 화학술어집에 준하되 한글로 표시할 수 없는 외국어인 경우는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에서 제정한 명명법에 의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상품명을 쓸 때에는 첫머리를 대문자로 쓰고 우상부에 ϕ 자를 넣는다. 관용용매, 시약 및 무기화합물을 분자식 또는 Chemical Abstract에서 사용하는 약식을 써도 좋다.

숫 자 본문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쓴다.

기 호 구두점은 쉼표(,), 마침표(.), semicolon(;), colon(:)을 명확하게 표시하되 고딕체로 표시하는 것에는 고딕체로 이탤릭체는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예. 실험재료, *Panax ginseng*

부 호 약전에 기재된 것 외에는 국제적으로 상용하는 것을 사용한다.

예.min, hr (시간), rpm (회전수), nm (파장), mg, kg (질량), l (liter), ml, ml (용적), mmHg (압력), Kcal (열량), cpm (방사선), Mg^{2+} , pH, LD₅₀, Rf, t_R, d₂₀⁴ 1.213, 15%(w/v), threom (meta), cis, sym, bp, d (밀도), N (규정농도), M (몰농도), mole (당량), V (volt), amp (ampere), n (굴절률), D, L (입체배치), mp 174~178° (decomp.), [α]_D²³-70°(c, 1.53 in CHCl₃)(Lit.⁴) mp 196~198°; IR, ν_{max}^{KBr} 3420, 2960 and 620 cm⁻¹; UV, λ_{max} (EtOH) 258 nm (log ε 4.15); ¹H-NMR, (400 MHz, CDCl₃) δ: 0.98 (3H, brs, 14-CH₃), 1.26 (3H, d, J = 6 Hz, 4'-H₂), 4.28 (2H, d, J = 12.0 Hz, 16-H₂); ¹³C-NMR (20 MHz, CDCl₃) δ: 16.5 (2-CH₃); MS, m/z (rel. int.) 452[M]⁺ (10.1); CD(q)³⁰ (nm); +90°(271) (c, 0.10 in EtOH), ORD; +55°(589),

959°(307), -740°(267), -362°(245) (c, 0.1 in dioxane)

동 위 원 소 질량수는 좌상부에 붙인다. 예, CH₃¹⁴CO₂Na

분 자 식 분자식은 C, H, O, N, S, halogen 이하 alphabet 순으로 한다.

그림·표·반응 경로도 및 구조식 별지에 첨부하고 본문에 삽입위치를 주서한다. 문자는 3~5 mm의 높이, 굵기 0.3~0.5 mm로 하고 선은 0.5~0.6 mm, 축은 0.3~0.4 mm의 굵기로 한다. Table은 상부에 I, II, III 같이 표시하여 제목을 붙이고 설명은 하부에 기재한다.

Fig. 1, 2, 3, Chart 1, 2, 3 및 Scheme I, II, III은 그림 하부에 제목과 함께 기재한다.

(2023년 2월 28일 개정)

(사)한국생약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약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정관 제24조 2항에 따라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를 포함하는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을 행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추진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방지
3.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5. 연구윤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

견을 청취하여 최종의결토록 한다.

4.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출간한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6 조 (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국제의학잡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s Editors, ICMJE)가 권고하는 저자의 자격인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그리고,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 그리고, ③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그리고, ④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연구에 기여는 하였으나 이런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 사”나 “Acknowledgement”에 적는다. 연구비 획득이나 연구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일반적인 행정지원, 원고작성 보조, 기술적인 원고 교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과 관련한 기여만으로는 저자가 되지 못한다. 이 외의 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출판윤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s Ethics, COPE)의 기준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학회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2주내에 제보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①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 ② 5년간 학회의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투고금지
 - ③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 ④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통보
 - ⑤ 학회 회원자격 박탈
2.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비윤리 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9 조 (투고 선언)

논문의 투고는 모든 저자와 해당 작업이 수행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논문이 제출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출처로 인용된 사람은 그러한 인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편집장과 부편집인의 결정에 따라 서면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문학회지인 “생약학회지”와 영문학회지인 “Natural Product Sciences”에 게재된 논문 및 관련 자료는 투고자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며 편집자 또는 출판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합니다.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게재되었을 경우, 모든 형태의 논문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생약학회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생약학회는 저자가 저널에 대한 기여를 재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요청이라면 지원할 것입니다.

1. 연구윤리규정: 한국생약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널의 편집자는 본 학회지의 출판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에게, 특히 편집자, 저자 및 원고 검토자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일련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연구윤리규정의 준수가 모든 과학적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모든 관련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구비 및 이해관계 접촉: 저자는 논문을 게재시 잠재적으로 편견의 근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제휴, 즉, 자금 출처 및 재무 또는 본 논문의 출판시의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3. 인체 및 동물 관련 결과를 포함한 경우: 저자는 논문에서 인체 및 동물 관련의 시료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포함할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과 가능한 결과를 해당 관계인 및 위원회에 설명한 후에 이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도 인체 기원의 시료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5월 1일 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